

2015.9.16.(수) ~
9.18.(금) / 3일간

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2.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4
3.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.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	6
5.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6.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7.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8
8.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	8
9.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	9
10.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·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0
11.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	13
12.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15
13. 2015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	16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○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민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	원안가결
○ 빗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○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○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○ 2015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수정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차상현, 김상복 의원
- 제안이유
 -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실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
 - 안 제3조 제2항제3호
 - 안전건설과 ⇒ 재난안전실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 제62조, 제112조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 - 「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」 제3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2.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조항 개정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
- 주요내용
 -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(제16조①항2호 개정)
 - 장성군 체육회 또는 장성군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 - 수탁자 등의 손해보험 의무가입 폐지(제21조⑤항 삭제 및 제21조①항 개정)
 - 개인정보보호법 적용(별지 제1호 서식)
 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3.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를 조정(인상) 및 감면 대상자 명시
- 주요내용
 -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 조정 (제7조①항 별표)
 - 32,000원/3.3㎡ → 32,000원/1㎡
 -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 대상 명시 (제9조)
 - 전액 면제 : 국가, 도, 군 행사 등 5개 대상
 - 50퍼센트 감면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등 5개 대상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4.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 급여종류 구체적 명시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변경
- 주요내용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(제2조제1호)
 - 지원대상자 급여종류 구체적 명시
 - 기초생활수급자 ⇒ 생계 · 의료급여수급자
 -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이 “최저생계비” 이하인 계층에서 “기준 중위소득” 이하로 변경
 - 고엽제법 법률명칭 변경 적용(제2조제12호)
 -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⇒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법적근거
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5.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『공무원 여비 규정』 개정에 따라 숙박비를 인상하고, 『정부조직법』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
- 주요내용
 - 숙박비 상향 조정(제4조)
 - 4만원 → 7만원(서울특별시), 6만원(광역시), 5만원 (그외 지역)
 -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(제5조)
 - 행정안전부장관 → 인사혁신처장
- 법적근거
 - 『공무원 여비 규정』, 『정부조직법』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6.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센터의 조직개편 및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조례 목적 등 관련 조항 변경
- 주요내용
 - “목적” (제1조)

- “청림문화 연구·교육 및 확산을 통해 장성을 청림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” 삭제

○ “청림문화 연구교육위원 위촉” (제8조제1항) 목적

-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⇒ 청림문화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도모

▪ 법적근거 : 『지방자치법』 제9조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7.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9. 8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과장 대신 평생교육센터소장 포함

▪ 주요내용

-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과장 대신 평생교육센터소장 포함

▪ 법적근거 : 『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』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8.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9. 8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군민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확보 : 4필지, 809㎡, 400,000천원
- 장성군 공용주차장 부지 확보 : 6필지, 1,379㎡, 869,998천원

▪ 법적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9.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9. 8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빛고을생활권 지자체(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, 나주시, 담양군, 화순군, 함평군, 장성군)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.

▪ 주요내용

○ 행정협의회 명칭 및 조직 구성(제2조~제5조)

- 협의회 명칭 : ‘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’
- 협의회 위원 : 11개 광역·기초 자치단체장 (회장-광주광역시장,

부회장-1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운번제로)

○ 협의회 기능(제6조)

-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및 각종 지역 연계 사업 추진

○ 협의회 회의 개최(제8조)

-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원칙,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
- 회의 주관하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

○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(제15조)

- 회원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
- 위원장은 회의 주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위원

▪ 법적근거

○ 『지방자치법』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○ 『지방자치법』 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10.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·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9. 8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장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, 수탁자의 자격을 개정하여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코자함.

▪ 주요내용

○ 수탁자의 자격(안 제6조)

-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군수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
■ 법적근거

○ 『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』 제49조(공영터미널의 설치·운영)

■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○ 수정안(별첨1)

별첨1

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
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6조 (수탁자의 자격) 개정안을 전부 수정하고, 대비표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수탁자의 자격)수탁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 중 군수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	제6조(수탁자의 자격)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·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2.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

11.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15. 9. 8.
- 제출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조례 제정이후 근거 법 및 사회 여건변화 등이 있었으나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함
- 주요내용
 - 제8조(공사의 시행) 급수공사 시행자를 기존의 대행업소에서 상하수도 설비 시공사로 확대 및 관급자재 규제 해소
 - 제10조(급수공사 대행업자)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별도 조례가 있는 바 지정기준 등 중복사항 삭제
 - 제16조(수도의 사용) 군의 사후관리 대상인 수도계량기의 위치를 대지 경계선 밖으로 명문화
 - 제18조(수돗물의 판매금지) 수도사용자 수돗물 판매제한 신설
 - 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요금감면은 수용가 신청에 의한 감면과 군 지정 식품모범업소, 자동이체, 국가재난지역 지정 시 군수 일괄 감면 규정 신설
 - 제37조(포상금 지급) 도수 및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
 - 기타사항 : 공공시설 부정사용자 과태료 [별표 4]기준강화
- 법적근거
 - 『수도법』 제38조(공급규정),
 - 『지방자치법』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 -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2조(요금)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 - 수정안(별첨2)

별첨2

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16조 제2항의 “신청자의” 를 “신규 설치 신청자의” 로 한다
- 제25조 제2항 제1호의 “모범업소는” 를 “모범업소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인 경로당” 로 한다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6조(수도의 사용) ① (생략) ② ----- <u>신청자의</u> ----- ----- ③ (생략)	제16조(수도의 사용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<u>신규설치 신청자의</u> ----- ----- ③ (원안과 같음)
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② (생략) 1. ----- <u>모범업소</u> ----- <u>소는</u> ----- 2. (생략) 3. (생략)	제3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(원안과 같음) 1. (원안과 같음) 2. (원안과 같음) ② (원안과 같음) 1. ----- <u>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</u> ----- 2. (원안과 같음) 3. (원안과 같음)

12.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14. 12. 17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-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전문 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처리시설을 위탁하여
-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처리 수질 확보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- 주요내용

- 시설명 :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

- 위치 :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59번지

- 처리공법 :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공법(KHTS)

- 처리용량 : 1일/95톤

- 총 사업비 : 15,092백만원

(국비 : 10,179 도비 : 376 지방비: 4,537)

- 법적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하수도법 제19조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장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(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)

-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
(환경부고시 제2014-78호)

○ 장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
(공공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 등)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13. 2015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▪ 제출일자 : 2015. 9. 8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주요내용

○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,881억 6천 9백만원으로
기정액 3,451억 7천 4백만원 보다 429억 9천만 5백만원이 증액

○ 그 중 일반회계는 3,755억 8백만원으로 414억 7천만원이 증액
되고 ,특별회계는 126억 6천 1백만원으로 15억 2천 5백만원이
증액됨,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

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	
계	388,169	345,174	42,995	12.46%	
일반회계	375,508	334,038	41,470	12.41	
특별회계	12,661	11,136	1,525	13.70	
의료급여사업	1,353	1,309	44	3.34	
농공지구조성 및 관리	2,813	1,922	891	46.39	
주차장 운영	1,894	1,613	281	17.45	
공영터미널운영 및 관리	151	144	7	4.86	
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	65	65	0	0	
드림빌	3,205	3,069	136	4.42	
주택사업	78	9	69	745.97	
주민소득지원 기금	346	346	0	0	
상수도사업	2,756	2,659	97	3.63	

■ **의결결과**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5. 9. 18.)

○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증액함.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람.

○ **심사결과(별첨3)**

2015년도 제2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

1. 세 입 : 42,994,901천원

가. 삭 감 : 해당없음

나. 증 액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
		세 입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42,994,901	-	-	-	42,994,901
일반회계	41,469,808	-	-	-	41,469,808
특별회계	1,525,093	-	-	-	1,525,093

라. 삭감조서 : 해당없음

마.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2. 세 출 : 42,994,901천원

가. 삭 감

- 1) 일반회계 : 620,000천원
- 2) 특별회계 :

나. 증 액

- 1) 일반회계 : 620,000천원
- 2) 특별회계 :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요구액	심 사 결 과				인정액
		세 출			인정액	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	
계	42,994,901	620,000	620,000	0	42,994,901	
일반회계	41,469,808	620,000	620,000	0	41,469,808	
특별회계	1,525,093	-	-	-	1,525,093	

라. 삭감조서

1) 일반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7건	950,000	620,000	330,000
122	402-01	장성읍 청운고가 노후난간 교체공사	180,000	180,000	-
125	401-01	장성읍 삼가2동 도로확포장공사	300,000	200,000	100,000
128	401-01	황룡강 자전거도로 설치사업	300,000	150,000	150,000
188	401-01	매화동 쉼터 조성사업(토지매입)	70,000	70,000	-
189	401-01	황룡행복마을 한옥체험관 개선공사	60,000	10,000	50,000
207	401-01	보건소 장애인 전용 주차장 조성공사	37,460	9,460	28,000
207	401-01	보건소 장애인 전용 주차장 조성 설계비	2,540	540	2,000

2) 특별회계

(단위:천원)

페이지	예산 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			
		해당없음			

마.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
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: 8,353,461천원(증 620,000천원)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